

2024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
-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-

- **지원대상** *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) 제외
 - ▶ **(상표권)** 한국 농식품(농·임·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 수출(예정)업체
 - ▶ **(특허권)** 국내 특허권을 선출원한* 한국 농식품(농·임·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 수출(예정)업체
- * 단, 포장디자인 특허는 국내 특허권 취득여부 관계없음, 파리 조약(국가별 개별 출원)에 의한 특허 출원만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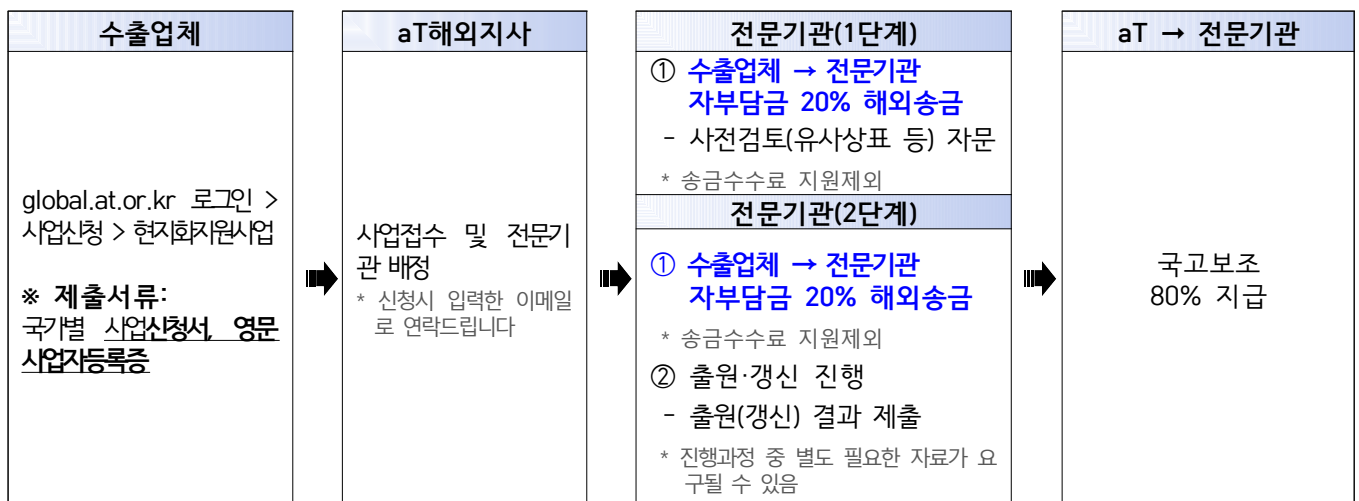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용	지원비율
(1단계) 사전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상표권) 유사상표 조사를 통한 출원 가능성 사전검토, 상표권 출원·갱신 절차 안내 등 ○ (특허권) 출원 가능여부, 특허권 출원절차, 제출서류 준비 등 자문 	80%
(2단계) 출원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상표권) 상표권 출원·갱신 지원 ○ (특허권) 각 국가에 개별적 특허 출원지원 	

※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**특허권 번역비** 및 **출원 이후 발생하는 비용 지원 제외**

※ 1단계 사전검토 결과 출원불가 시 결과통보 후 자문 종료됨

○ 진행절차 안내



※ (예외) 홍콩/대만의 경우, 수출업체가 100% 선지출 후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 시 자부담 20%와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80%를 환급하며, 환급시기는 3, 6, 9, 12월임 / '25년부터 예외없음

○ 지원국가 : <현지화지원 국가별 주요 안내사항 및 전문기관 현황> 참고

*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·축소될 수 있으며,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○ 유의사항

- ▶ **자부담금 상당기간(1개월) 미입금, 서류 미비, 연락두절 등의 경우 사업신청이 취소 될수 있음**
 - ▶ 일부 국가는 수출업체에서 비용 100% 선부담 후, 출원완료 및 적격증빙 제출 시 80% 사후정산하는 사업으로, 정산금 송금은 분기별(3,6,9,12월) 추진되니 사업신청 시 유의 바람
 - ▶ aT와 약정체결 되어있는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현지화지원사업 자문만 지원 가능
 - ▶ 한번에 1개 국가, 최대 5개 상표까지 신청가능하며, 그 이상인 경우 여러 건 신청
 - ▶ 여러 건 사업신청 가능하나,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해야 하며, 신청 건당 자문비용은 사업 신청 후 전문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함
 - ▶ aT 사업 최초 신청 시 '무역통계정보 제공 이용동의' 필수
- * 한국무역통계진흥원(www.trass.or.kr/at.isp) 접속 > 사업자공동인증서로 동의하기